등록번호: 20212861

최초 등록일: 2021.10.19.

최종 등록일: 2024. 12. 20.

오 공 비 어

정 보 공 개 서

(주)코미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식회사 코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 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 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 중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416번길 74-34(덕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859-876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859-876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 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기	7	주 소					
	오공비여	ሃ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416번길 74-34(덕계동)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	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코미	2020. 3. 3.		2022. 7. 1.	석원락	031-859-8760		031-859-8761	
	법인등록번호 2802		11-0205150	사업자등록번호		675-87-0260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기연명	기업명 브랜드		주소	대표자
여부	7180		인수·합병일	1	-11-12-11
다른 기업의				경기도 양주시	
가맹사업	코미푸드시스템	오공비어	2022. 7. 1.	고덕로 139번길	석원락
일부를 인수함				476-42(덕계동)	
다른 기업의				경기도 양주시	
가맹사업	코미푸드시스템	돌밥돌밥	2022. 7. 1.	고덕로 139번길	석원락
일부를 인수함				476-42(덕계동)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오공비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오공비어	
상 호	오공비어 OO점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58,420	210,715	47,705	1,357,436	40,791	37,705
2023년	808,225	709,583	98,642	2,667,918	30,377	10,937

^{※ 2022. 7. 1.}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1년도 이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ᆣ	매출액	상한	하한		
	2021년	-	-	-		
오공비어	2022년	-	-	-		
	2023년	-	-	-		

당사는 가맹사업 외, 도매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모두 도매업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가맹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	------	------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석원락	사내이사	2020. 8. ~ 현재	주식회사 코미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761(0)
2023년 12월 31일	1	0	1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구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오공비어 코미푸드시스템		2021. 10. 19. ~	펍전문점
/1명본구 	고미구드시드램	(20212861)	2022. 7. 1.	비난단점
가맹본부	오공비어 주식회사 코미		2022 7 1 성제	ਜ਼ ਸ਼ ਸ਼ ਸ਼
	구역회자 고미	(20212861)	2022. 7. 1~현재	펍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오공비어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 준비 중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오공비어 가맹사업 현황

1. 오공비어를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2. 오공비어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코미	오공비어	석원락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416번길 74-34(덕계동)

3. 오공비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O TUIO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오공비어	외식	펍전문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오공비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E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가맹/	나업 개기	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오공비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22		가맹시	h업 개시 전으	으로 해당사형	t 없음	
2023						

6. 오공비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상호/이		영업	정보공개서	가맹점	및 직영	점 수
구분	· 중호/이 름	업종	표지	등록번호	2021.12.	2022.	2023.12.
	8		Ψ.(0762	31	12.31	31
가맹 본부	㈜코미	한식 전문 점	돌밥돌밥	20212844	가맹사업	개시 전	0/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사업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8. 오공비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사업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오공비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가맹사업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양주회천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031-861-0161
7 4 6	0구되던	1399번길 7	031-801-01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 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 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코미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한 경우
- 3. 3.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오공비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400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 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 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78	금액	지그 기치	가맹점사업자의	반환될 수 없는
구분	급액	지급 기한	귀책사유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미납채무가 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 우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	비고
합계	6,400	
가입비	3,300	부가세포함
교육비	1,100	구기제도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면적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²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금액			
총계		56,215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3,000	1,650	계약금: 계 약체약과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시설	가맹본부	11,115	동시		찬냉장고,
10012	7067	11,113	중도 금:		튀김기 등
의탁자	가맹본부	8,800	공사 시작		20평 기준
주방집기	가맹본부	2,200	후 (1)일까 지 자그 · 개	계약취소	주방 / 홀 집기
홍보 및 광고용품	가맹본부	1,100	잔금 : 개 설(3)일 전 까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외부어닝, 화장실공사, 에어컨설치, 소방시설, 전기증설, 철거 등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관리감독의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000원을 (부가세 포함)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
가맹희망자	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기정의당시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
	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군 교육 기군 계급 '세층 기군

ᄀᄓᆘᄌᆝᅛᅅᅚ	그이어해에 경거되어가 어우 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 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 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단	개별청구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 침에 따라 가 맹점사업자에 게 일부 부담 (가맹본부 50%, 가맹점사 업자 측 50%	개별청구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개별청구		교육 필요시 지급
POS 사용료			해당사항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기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분 담비율을 제외 한 나머지	개별청구		VII-1 참조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귀하에게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오공비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 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가맹사업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오공비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오공비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오공비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 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리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튀김, 치킨 등을 판매하는 펍 전문점	오공비어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원칙	
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배후 3,000세대 이하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 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제 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잭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세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오 공비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 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오공비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오공비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가맹사업 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가맹사업 개시 전	으로 해당사항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오공비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10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10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	
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I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100 2 3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일 역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4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 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 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 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 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산가기준 등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및 재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 및 시설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 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 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관리기준 위반 및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여 재교육 후 동일사유 가 발생된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 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 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제2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 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 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당사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있는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	문의: 가맹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	관리팀
	운영권 이전 완료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 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 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오공비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미
펍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후 6:00 ~ 오전 2:00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문의: 가맹관리팀
오후 6.00 ~ 오전 2.00	준수	군의, 기정한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 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ㅂ다 저뉘	비고
下正	유고 승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 매출액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 매출액에 따라 분담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3시)
			판촉비의	판촉 계획 공고 →	
판촉		판촉비의	50% 중	가맹점의 참여 →	월별
전체	통상적인 전체 행사	50%	가맹점 총	가맹점부담액 제시	판촉
행사		3070	매출액에	→ 광고 →	행사
			따라 분담	사후결과 공고	
기타개별 행사	행사에 따	라 달라짐		상동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관련 내용	관련 계약조문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제23조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7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비율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
제외사유	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		
		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		
	상품, 설비(집기),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판매촉진, 고객관리,	용 등 포함)를 가맹점		
가맹본부	위생관리, 교육훈련,	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문의:
요청 시	회계 등 가맹점	경영지도 후 30일 이	부담	가맹관리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경영지도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 도 요청 → 가맹본부 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담 (기맹금에포함된 통상의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문의: 가맹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오공비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재 교육	품질관리기준에 미달될 경우 또는 고객의 클레임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집단 강의 위탁교육	통지 후 7일내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오공비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년 2일	22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재 교육	미정	미정	가맹점 부담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	제34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3조 (개시 승인)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239~4)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 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분류	상품명	권장가격(원)	비고
	오징어튀김	10000	
	모듬돈까스	12000	
	함박감자튀김	12000	
	후라이드	14000	
튀김류	양념치킨	15000	
	간장치킨	15000	
	윙&봉	13000	
	감자튀김	8000	
	모듬튀김	12000	
	연어셀러드	14000	
샐러드류	참치셀러드	14000	
	치킨셀러드	12000	
	치즈피자	10000	
피자류	불고기피자	12000	
	쉬림프피자	12000	
	닭발볶음	15000	
	오징어볶음	14000	
볶음류	낙지볶음사리	14000	
	골밸이쫄면	14000	
	똥집볶음	12000	
	노가리	8000	
	먹태	10000	
	쥐포튀김	7000	
마른안주류	쥐포	7000	
- LUT#	육포	12000	
	피데기	10000	
	오징어	10000	
	모듬마른안주	15000	

탕류	알탕	15000	
	짬뽕탕	14000	
	나가사끼짬뽕	14000	
	오뎅탕	12000	

[별첨]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 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도- [서식] (앞 쪽)

			처리기간
		가맹금예치신청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71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LT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당	뱅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기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츠	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